

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(경미한)변경 인가 고시

고양시 고시 제2021-271호(2021.7.2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4일
고양시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: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9-10번지 일원 / 144,795.30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- 성명: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오재일)
- 주소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04번길 10, 3층 (토당동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변경)

- (당초)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(변경)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1. 7. 23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(변경없음)

사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아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없음)

자.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차. 변경 사유 및 내용

- 변경 사유 :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
- 변경 근거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1의3호
- 변경 내용 : 상기의 “라.정비사업의 시행기간” 과 같음